

공공근로사업에관한건의안

의안번호	제 155 호
의결년월일	99. 4. 15 (제70회)

발의년월일 : 1999. 4. 14

발 의 자 : 김만수 의원 외 9인

주 문

○ 공공근로사업대상자의 신청자격기준이 변경되어 기존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였던 일부 공공근로 대상자의 생계대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행정 자치부에 건의합니다.

- 99년도 3단계부터 공공근로사업대상자 신청자격기준을 만 18세부터 65세 이하로 환원

제안이유

○ 99년도 1단계까지 공공근로사업대상자 신청자격기준을 만 18세부터 65세까지로 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99년도 2단계부터 60세까지로 변경 운영함으로써 기존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던 61~65세의 공공근로자가 생계대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61~65세 이하도 공공근로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대상자 신청자격기준을 환원해 줄 것을 건의함.

참고사항(99년도 공공근로사업자 현황)

구 분	총 인 원	61~65세	비 고
99년도 1단계 참여자	9,165명	888명	
99년도 2단계 신청자	8,201명	696	

공공근로사업에관한건의문

공공근로사업 대상자의 신청자격 기준이 변경되어 기존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였던 일부 공공근로 대상자의 생계대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제출하오니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합니다.

○ 99년도 3단계부터 공공근로사업대상자 신청자격기준을 만 18세부터 65세 이하로 환원

1999. 4. 15

부천시의회의원일동